특허업무에 관한 포괄 계약서

위임인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이하 "갑")

수임인 가디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하 "을")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특허관련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계약을 체결 한다.

다 음

제 1 조 (포괄계약의 성립)

이 계약의 체결로, "갑"은 "갑"이 수행하고자 하는 특허업무에 대해 "을"을 "갑"의 특허업무를 전담하는 자로 지정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다.

제 2 조 (특허업무의 범위)

- ① "갑"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특허문제 (특허분쟁, 특허출원 및 기타 특허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포함한다)에 관해 "을"에게 처리를 요청하며, "을"은 "갑"이 요청하는 문제에 관해 기술적, 법적 문제에 관한 분석, 상담, 의견의 제시, 자문이 요청되는 제반회의에의 참석, 관련 자료의 조사, 검토, 교육 및 강의를 포함한 기타 모든 기술 개발 및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업무요청에 응한다.
- ② 그리고 "을"은 출원, 소송, 심판,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제반신청 및 쟁송사건, 기타 변리사법상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갑"의 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한다.

제 3 조 (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갑"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위 ①항의 사무처리에 있어 변리사법상 변리사로서의 품위와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 4 조 (비용청구와 정산)

- ① "갑"과 "을"은 "을"이 제시한 첨부의 보수표에 의거하여 비용을 정산하기로 합의한다.
- ② "갑"은 "을"에게 매분기별로 각 분기가 시작되는 달(1,4,7,10월)의 말에 일금 일천이백만원(1,200만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인 『598-04-126176, 조홍은행, 이철희』에 입금한다.
- ③ "을"은 "갑"이 요청하는 업무에 대해 처리한 결과에 대한 정산과 보고를 매분기말 "갑"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이 ②항에서 입금한 금액으로부터 "을"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에 대한 정산을 하되, "갑"의 장기고객임을 감안하여 첨부의 보수표의 금액으로부터 수수료(관납료, 해외송금분 등은 제외)를 10% 삭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상 "갑"을 위한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사업상, 재산상의 모든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 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통지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 (위촉기간)

본 계약에 의한 특허고문의 위촉은 2005년 05월 01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동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기간 연장된다.

제 8 조 (기타사항)

본 계약의 해석상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시나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아래의 날짜에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5. 05. 07.

갑: 주식회사 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 번지 2 . 대표이사 장 호 승 (원)

을 : 가디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8-16 유성빌딩 203호 대표 변리사 이 철 희